

排出 賦課金 制度

鄭 國 鉉
〈環境廳 振興協力課長〉

이번 회에도 계속해서 부과금 산정 방법을 예시코자 한다.

[배출업소 상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로서 BOD의 배출농도가 300 mg/ℓ (배출허용기준 : 150 mg/ℓ) 일일유량이 850,000 ℓ, 배출기간이 30 일(1984년도)일 경우의 부과금 계산방법은? (산정공식)

오염물질 1 kg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1) BOD 1 kg당 부과금액 = 250 원

2)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 (A) × 배출기간 (B)

A)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850,000 ℓ × 150 mg/ℓ × 10^{-6} = 127.5 kg = 127 kg

B) = 30 일

따라서 A × B = 127 kg × 30 = 3,810 kg

C)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300 - 150) \text{ mg/ℓ} \div 150 \times 100 = 100 \% = 1.9$

D) 지역별 부과계수 = “나”지역 = 1.5

E)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1984년도 = 120 / 100 = 1.2

따라서, 부과금액 = 250 원 × 3,810 kg × 1.9 × 1.5 × 1.2 = 3,257,550 원

특히 여기서 주의를 해야할 점은 BOD와 COD가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중 초과농도가 높은 한가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이다. 어떤 시도에서는 BOD와 COD 양오염물질에 모두 부과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초과농도가 낮은 오염물질에 대한 부과금은 환급해

야 한다.

또한 지역별부과계수가 대기 및 악취분야에서는 I, II, III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질분야에서는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다 및 특례지역등 3종으로 구분, 지역별 부과계수는 각기 2, 1.5, 1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 및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BOD 또는 COD의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청정지역은 50 mg/ℓ 이하 이고 “가”지역은 100 mg/ℓ 이하, “나”지역은 150 mg/ℓ 이하, “다”지역은 200 mg/ℓ 이하, 특례지역은 300 mg/ℓ 이하 이다.

[배출업소 상황 : 부유물질(SS)]

“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로서 부유물질의 배출농도가 400 mg/ℓ (배출허용기준 : 150 mg/ℓ 이하), 일일유량이 125,000 ℓ, 배출기간이 50 일(1984년도)일 경우 부과금 계산방법은?

1) 오염물질(SS) 1 kg당 부과금액 = 250 원

2)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 (A) × 배출기간

A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 125,000 ℓ × 250 mg/ℓ × 10^{-6} = 31.25 kg = 31 kg

B = 50 일

따라서 A × B = 31 kg × 50 = 1,550 kg

3)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400 - 150 \text{ mg/ℓ}) \div 150 \text{ mg/ℓ} \times 100 = 166.666 \dots \% = 1.9$

4) 지역별 부과계수 = “나”지역 = 1.5

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1984년도 = $\frac{120}{100} = 1.2$

따라서,

부과금액 = 250 원 × 1,550 kg × 1.9 × 1.5 × 1.2 = 1,325,250 원 이다.

〈다음호에 계속〉